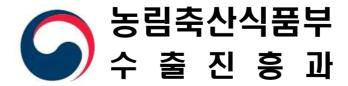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2018. 8. 2.



목 차

1. 목 적1
2. 배 경1
3. 기본방향2
4. 기관별 안전관리 역할2
5. 기관별 안전관리 체계도3
6. ID 시스템
가. □ 정의4
나. ID 관리5
다. ID 활용방법5
라. ID 등록 및 변경 ······· 6
마. ID 업체(농가) 사후관리 ······12
7. 혼입 방지대책15
8. 안전성조사16
가. 기관별 조사체계16
나. 안전성 수시점검반 운영16
9. 위반 제재 ···································
9. 위반 제재17
9. 위반 제재 ···································
9. 위반 제재 17 가. 제재 절차 17 나. 제재 기준 18
9. 위반 제재 17 가. 제재 절차 17 나. 제재 기준 18 10. 수출 채소류「안전성위원회」운영 19

목 차

11. 기타
/배리 1는 지기 시민 사는 레이크 ID (기크디크리 - 리크리) 기리기 00
〈별지 1호 서식〉일본수출 채소류 ID (신규등록/농가추가)신청서 ·······22
〈별지 2호 서식〉자체 안전성관리계획서23
〈별지 2-1호 서식〉자체 안전관리계획 결과보고25
〈별지 3호 서식〉계약재배 약정농가(생산자단체) 명단26
〈별지 4호 서식〉계약재배 농가(생산자단체)별 현황27
〈별지 5호 서식〉수출계약재배 약정서(예시)28
〈별지 6호 서식〉공동선별·포장 작업장 현황 ·······32
〈별지 7호 서식〉일본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 준수 서약서33
〈별지 8호 서식〉수출업체 개요 및 채소류 일본수출실적34
〈별지 9호 서식〉농약관리 기록대장35
〈별지 10호 서식〉비료·활성제 관리 기록대장 ······36
〈별지 11호 서식〉일본수출 채소 생산농가 지도·점검 기록부 ······37
〈별지 12호 서식〉일본수출 (채소류 명칭) 공동선별장 작업일지38
〈별지 13호 서식〉일본수출 (채소류 명칭) ID 부착물 사용기록부 ······39
<별지 14호 서식> 농약 공동 구입·배포 기록대장 ······40
<별지 15호 서식(1)> 일본수출 채소류 ID 현장 평가표(수출업체) ·······41
<별지 15호 서식(2)> 일본수출 채소류 ID 현장 평가표(농가) ······42
<별지 15호 서식(3)> 일본수출 채소류 ID 현장 평가표(공동선별장) ·······44
〈별지 16호 서식〉일본수출 채소류 ID 종합평가표 ······45
〈별지 17호 서식〉수출농산물 안전성 위반내역46
<별지 18호 서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47
〈별지 17호 서식〉 무역정보이용 동의서48
〈참고 1〉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별 연락처49
〈참고 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식별코드50
[별첨 1]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성조사 요령 [농산물품질관리원]
[별첨 2] 일본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 지침 [국립농업과학원]

지침통합 2009. 7. 27. 개정 2009. 12. 24. 전면개정 2010. 12. 17. 개정 2012. 1. 27. 개정 2013. 10. 14. 개정 2015. 6. 30. 개정 2018. 8. 2.

1. 목 적

☐ 일본정부의 식품안전성 강화에 대응하여 대일 수출 채소류의 생산·출하 단계에서 범정부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산 채소류의 일본 통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2. 배 경

- □ 일본에서의 잔류농약 검출시, 행정조치¹⁾가 시행됨에 따라 ID제도 등 품목별 안전관리지침 도입을 통한 안전성 관리 강화
 - * 지침 도입: 오이('94.2), 방울토마토('01.10), 파프리카('03.10, '07.11개정) → 대일 수출 채소류 안전관리 기준마련('08.8) → 일본 후생성 방문 실사('08.9) → 고추・들깻잎 ('08.11) → 파프리카 ('09.4) → 통합지침 제정('09.7)
- □ 2006년 일본의 PLS제도²⁾ 시행으로 식품에 대한 규제대상 유해물질수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필요

-< 일본 식품위생법 >

- 일본정부의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개정('03.5.30), 시행('06.5.29)
- 주요내용: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수입식품 감시체제 강화, 포괄적 수입 금지 등 수입규제 강화, 잔류농약 등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05.11.29 고시) 도입, 법령 위반시 처벌강화

^{1) (}일반)모니터링검사(5% 수준)→(1회적발)모니터링 강화(30%수준)→(2회적발) 명령(전수)검사→(전체수입의 5%) 포괄적수입금지

²⁾ **Positive List System:** 식품 유해물질별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정량 (0.01ppm)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3. 기본방향

- □ 정부 기관별 역할 분담, 민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수출 채소류의 체계적 안전관리로 일본 수출의 안전성 확보
 - O 수출농산물 관리 단계별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 관리
 - 수출업체 ID 등록제도 정착 및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 ☐ 농산물 수출업체·생산농가에 대한 상시 지원시스템 구축
 - O 잔류허용기준치 설정이 필요한 성분의 현지 등록 추진 및 생산농가 대체농약 사용유도
 - 생산자와의 상시 접점 형성으로 수출 애로사항 수시 파악 및 조치

4. 기관별 안전관리 역할

참여주체	기 능	역 할
농림축산식품부	총 괄	○일본 수출채소류 안전성관리 총괄
		○ 일본 수출채소류 안전관리 지침 마련
		○일본 수출채소류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국립농산물	안전성 조사	○일본 수출채소류 안전성조사요령 마련
품질관리원		○ 중앙(지역) 안전성위원회 참가
		○ 수출업체·생산농가 안전성 교육 협조
농림축산	식물검역	○일본 수출채소류 식물검역 관련 업무
검역본부	行艺行日	○ 중앙(지역) 안전성위원회 참가
	농약 전반,	○ 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 마련 및 홍보
농촌진흥청	농산물 수출	○ 일본 잔류농약허용 성분 및 기준 설정 관련 업무
	교육 총괄	○ 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 교육계획 수립시행
시·도	안전 관리 및	○ 관내 수출농가대상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농업기술원)	농가 교육	○ 수출 채소류 지역안전성위원회 참여
시·군	농가지도	○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현장지도
(농업기술센터)	8/1/12	○ 농약관리대장 기록 지도
(중합기출엔니)	안전성관리	○ 수시 안전성점검반 운영 협조
	ID 관리 등	○일본 수출채소류 안전관리 지침 운영
한국농수산	등수산 │ ^{Ⅲ 판디 등} │ 실무	- ID관리, 업체·농가 교육 등
식품유통공사	っせて	○ 중앙(지역) 안전성위원회 운영
	수시점검	○ 수시 안전성점검반 운영
	수출농산물	○자체 안전성관리계획에 따른 생산·출하 관리
수출업체	구물공선물 안전 관리	- ID부착물 관리, 미등록 농가 혼입방지대책 마련 등
	년엔 전 니	○ 생산농가 안전성 관리 점검
생산농가	수출농산물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과 자체 안전성관리
787년 67년	안전 생산	계획에 따른 생산, 안전관리 교육 참석

※ ID 등록 수출업체・소속생산농가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수출안전성교육 이수 의무→ 교육실시 기관은 수출업체·ID농가에 확인증 발급

- 이수기준: (농가)총 4시간 이상 / (수출업체 안전관리담당자) 연 2회/총 8시간 이상

※ 교육이수 불이행 조치사항

구 분	1년	2년 연속	3년 연속
수출업체	경고	1년간 수출농가 ID 추가 등록 제한	2년간 수출농가 ID 추가 등록 제한
소속(계약)농가	경고	ID 삭제· 1년간 ID 등록 제한	ID 삭제· 2년간 ID 등록 제한

5. 기관별 안전관리 체계도



농촌진홍청

www.rda.go.kr

- 수출 채소류 농약안 전사용지침 마련 및 홍보
- 신규등록, 기준변경 농약 등 파악 및 홍보
- 일본 잔류농약허용 성분 및 기준 설정
- 수출 채소류 농약안전 사용 교육계획 수립시행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일본 수출채소류 안전성관리 지침 마련 및 총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 ○일본 수출채소류 안전 관리 지침 운영
- ID수출업체 · 생산농기관리
- 업체·농가 교육실적 점검

 \Rightarrow

 \Leftrightarrow

○ 중앙(지역) 안전성위원회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 수출농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부적합품 발생시 유관 기관 통보
- 수출농산물 안전성조사 요령 마련
- 수출업체·농가 안전성 교육 협조

<u> 농업기술원</u>

시군 농업기술센터

- 관내 수출농가대상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시군센터 농약안전사용 지도·점검
- 수출 채소류 지역안전성 위원회 참여
- 수출농가 지도점검
- 농약안전사용 및 농약 관리대장 기록 지도

수출업체

(소속생산농가)

- 자체 안전성관리계획에 따른 생산출하 관리 -ID부착물 관리, 미등록
- 농가 혼입방지대책 마련
-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안전 관리 점검
- 수출 안전성 교육 참석
- 소속농가의 내용변경 (명의, 면정)에 대한 신고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 ○일본 수출채소류 식물검역 관련 업무 ○중앙(지역)
- 안전성위원회 참가

 \Leftrightarrow

6. ID 시스템

가. ID 정의

□ ID란?

- O 일본으로 수출하는 채소류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수출업체와 생산농가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
 - * 일본의 명령검사(전수, 30%) 품목이라도 ID등록 품목(수출업체)은 先**통관 후 샘플검사** 실시

□ ID구성요소

○ 수출자 ID와 생산이력 코드 총 12자리로 구성

수출자 ID	생산이력 CODE
업체 ID(2자리)	등록연도(2) - 품목(2) - 생산지역(3) - 생산농가(3)

- 수출자 ID : 수출업체 등록 순으로 일련번호 부여

- 품목번호 : 기존 품목번호 다음 순차적으로 등록번호 부여

— 〈ID 표기 예시('18년) 〉

i) 등록연도 : 등록시점의 연도를 표시(예 : 2018→ 18)

ii) 품목번호 :

번호	01	02	03	04	05	06	07	08
품목	오이	방울 토마토	파프리카	홍고추	들깻잎	청고추	대과 토마토	참외

iii) 생산지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식별코드[참고자료 2]에 따라 부여

(예 : 고양시→ 071)

iv) 생산농가 : 해당 수출업체에 속한 농가별 일련번호 부여(예 : 홍길동→ 001)

= BOX상 ID 표기 예 =

수출업체 ID	재배이력 코드
00	00 - 00 - 000 - 000 (등록연도-품목-생산지역-생산농가)

나. ID 관리

- □ 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
- □ 주요 업무
 - O ID 등록 및 농가 내역 변경 등 ID 관리운영 전반
 - O ID 등록 필요 품목 수요 조사 및 등록 추진
 - O 안전성 위반 등 발생시 경위조사, 위원회 개최, 제재사항 시행 등

다. ID 활용 방법

- □ D 부착물 제작 및 부착관리(Box 인쇄 시 공통적용)
 - O 부착물(Box상) 규격 및 형태, 색상
 - 색상은 제공하는 파일의 색상 또는 흑백 사용

권장 규격	권장 형태		
	韓国産野菜登録ID		
가로 10.5cm × 세로 3.5cm	輸出者ID	生産履歴 CODE	
	00	00-00-000-000	
		AN OF	

O 부착물 제작

- 수출업체는 유통공사에서 별도 제공하는 파일(ai, jpg 등)을 활용하여 제작
- O 부착물(Box 포함)의 관리
 - 수출업체(생산농가)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위조(또는 도용) 방지 조치를 강구
 - 관리책임자는 일본수출 ID 부착물 사용기록부<별지 13호 서식>을 활용 하여 ID 제작과 사용에 대하여 기록(1년 보관)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

□ 부착물 사용 및 기재방법

- O 수출업체는 제작된 ID 부착물을 일본수출 포장박스 외부에 식별가능 토록 부착(혹은 박스상 인쇄)
- O 수출업체는 해당 ID 구성요소를 일본 통관시 제출하는 P/L(Packing List)의 REMARKS 항목에 기재

라. ID 등록 및 변경

ID 신청

□ 신청 자격

- 신규 ID 발급은 안전성위반 예방과 수출전문 업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로 제한
 - * ID 신청 수출업체 및 소속 농가에 대해 1년 이내 안전성 위반시(품목 구분 없음) ID 신청 대상에서 제외
- ① 파프리카 3년간 수출 누계실적 50만 USD 또는 국가 전체 수출금액의 10% 이상 수출한 업체(수출대행자)
 - ※ 파프리카를 제외한 품목은 수출실적 제한 없음

《 파프리카 수출실적에 의한 규모 제한 규정의 예외 》

- · 간척지 유리온실 등 안전성 관리가 우수한 대규모 수출전문단지(전체 면적 10ha 이상)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 · 국내외 무농약인증 이상의 안전인증 농가와 계약한 수출업체 ※ 무농약인증 농가의 경우 농약검출 시 인증기관 통보
- ② 수출업체 계약재배 면적의 총 합이 3ha(유리온실 2ha) 이상
- ③ ID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각각의 재배면적이 2,000㎡이상
 - 단, 파프리카는 3,300㎡ 이상(**'09년 12월 지침** 개정 이전에 ID를 취득한 3,300㎡미만의 재배면적 농가는 현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신청 방법

O ID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총 14종)를 구비하여 유통공사 해당 지역본부로 제출하여 신청

【 제 출 서 류 】

- ① 일본수출채소류 ID 등록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및 자사공문
- ② 자체 안전성관리계획서 <별지 2호 서식>
- ③ 계약재배 약정농가(생산자단체) 명단 <별지 3호 서식>
- ④ 계약재배 농가(생산자단체)별 현황 <별지 4호 서식>
- ⑤ 일본수출 채소류 계약재배 약정서 <별지 5호 서식>

【 제 출 서 류 】

- ⑥ 공동선별·포장 작업장 현황(사진첨부) <별지 6호 서식>
- ⑦ 일본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 준수 서약서 <별지 7호 서식>
- * 자사 선별장이 아닌 경우 선별장 임차서. 선별포장책임자 업무약정계약서 사본
- ⑧ 수출업체 개요 및 채소류 일본수출실적 <별지 8호 서식>
- ⑨ 수출업체와 계약한 소속농가 전부의 자체 잔류농약검사 내역 및 결과 (최근 1년이내)
- ⑩ 무역업 신고필증 사본
- ① 일본수출 채소류 ID현장평가표에 의한 자체 평가결과 <별지 15호 서식(1.2.3)>
- ① 계약농가의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 자조회 가입확인서(자조회 발행)
- 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18호 서식>
- (4) 무역정보이용 동의서<별지 19호 서식>

주1) ⑫의 경우, 파프리카 ID 신청업체만 작성

ID 등록 심사

□ (1차) 서류 심사

O 평가기관 : 유통공사 수출업체 소재 지역본부 및 본사

O 평가내용 : 수출업체 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 여부

- O 평가결과 통보
 - (적격업체) 유통공사 본사에서 해당 지역본부 통보 및 2차 현장평가 지시
 - (부적격업체) 수출업체 부적격 사유 통보

□ (2차) 현장 심사

- O 평가기관 : 지역안전성위원회
- ※ 해당 지역본부에서는 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원 외 1인 이상 포함된 총 3인 이상의 『현장실사반』 구성
- O 평가대상: 1차 서류 심사결과 적격업체
- O 평가방법: 관리사무실, 공동선별장 및 생산농가 등 현장 방문 평가
 - 일본 수출 채소류 ID 현장평가표<별지 15호 서식(1,2,3)>에 따라 수출 업체 및 농가 평가

- 서식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하되, 『현장실사반』위원 전체의 의견을 해당 수출업체, 농가별로 1부씩 작성(위원별 작성 불요, 위원명 기재)
- 해당 수출업체의 소속농가가 타 관할지역 내 소재 시, 지역본부 간 협조를 거쳐 현장실사 가능

── 【 평가대상 샘플 선정요령 】 ───

- ◇ 수출업체(관리사무소). 공동선별장 등 공동시설은 전수 조사
- ◇ 평가대상 농가 선정 요령
 - 전체 농가 수 5농가 미만: 전수조사
 - 전체 농가 수 5~10농가 미만 : 5개소 조사
 - 전체 농가 수 10농가 이상: 6개소 또는 전체 30%농가 중 많은 개소
- * 대상농가는 조사 당일 현장에서 임의선정
- * 대상 개소 수의 선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O 주요 평가 내용

- (수출업체) 농가 계약 및 관리 현황, 작물보호제 관리(잔류허용기준 최근 목록, 공동구매, 안전관리, 사용 등), 최근 1년 이내 안전성 검사 실적, 안전성 교육 등
- (공동시설) 품질 및 선별 기준, 공동선별장 및 저온창고 등 보관시설, 선별작업 관리 실태, 위생관리 실태 등
- (생산농가) 재배포장 관리상태, 재배지 위생관리, 농약사용 실태 및 기록관리, 영농일지 기록 등
 - ※ 작물보호제, 비료·활성제 보관 및 사용 및 선별장 기록은 "일본수출 채소류 관리 지침"의 서식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기록 유지 필요

O 평가 결과 통보

- 현장 평가 후 유통공사 지역본부는 즉시 본사에 결과 보고
- 현장 심사결과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경우, 샘플 농가를 포함한 신청 건 전체를 부적격으로 판정
 - ※ 부적격으로 판정된 건의 수출업체는 해당 품목으로 3개월 간 ID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동일 품목으로 3회 이상 부적격 판단을 받은 업체 및 농가는 해당 품목에 대해 향후 2년간 ID 신청을 제한한다.

□ (3차) 종합 평가

O 심사기관: 중앙안전성위원회

O 개최주기: 분기 1회(연 4회)

○ 평가대상: 2차 심사결과(수출업체, 농가) 평가 항목별 "부적격"이 없는 업체

O 서류제출: 종합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다음의 추가 서류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① 신청업체 PPT 발표자료(자체 안전관리계획 포함)
- ② 농약 공동구매계약서 사본(구매계약서, 농가 공동구매계약 동의서)
- ③ 농약관리 기록대장 사본<별지 9호 서식>
- ④ 비료·활성제 관리 기록대장 사본<별지 10호 서식>
- ⑤ 농약전담관리사 이력 및 재직증명서
- ⑥ 일본 수출채소 농가 지도·점검 기록부<별지 11호 서식>
- ⑦ 공동선별장 및 선별·포장 작업책임자 지정 여부
 - * 자사 선별장이 아닌 경우 선별장 임차서. 선별포장책임자 업무약정계약서 사본
- ⑧ 일본 수출 (채소류 명칭) 공동선별장 작업일지<별지 12호 서식>
 - * 선별포장작업자책임자의 공동선별장 작업일지 관리내역
 - * 작업일지에 첨부된 농가별 농약사용기록대장 사본 포함
- ⑨ 자체 안전성 검사실적 및 증빙서류 사본(최근1년이내)
 - * 1차 신청시, 1년 이내 위반내역(자체검사, 농관원검사, 통관검사)이 존재할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계약농가에 대한 관리 증빙(순회점검기록부, 위반일 이후 재검사실적 등 관리실적)
- ⑩ 재배지 지적도 및 토지 소유 또는 임차여부 확인서류
- 평가방법: 신청업체 면담 평가(타 품목 ID 기 등록업체의 경우 서면심사 가능)
 - 자체 안전성계획서가 포함된 신청 업체의 사업계획서 프레젠테이션 발표 후 응답 결과를 일본 수출 ID 종합평가표<별지 16호 서식>에 따라 위원별 평가
 - 심사 위원별 해당 전문분야 질의 및 신청업체 답변
 - 심사 위원별 평가 후 전체 및 항목별 점수 취합
 - 종합 심사결과 전체 평균 8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ID등록 추천 대상 업체』로 선정
 - ※ 단. 평가위원 전원이 동일항목을 미흡(2점)으로 평가한 경우 추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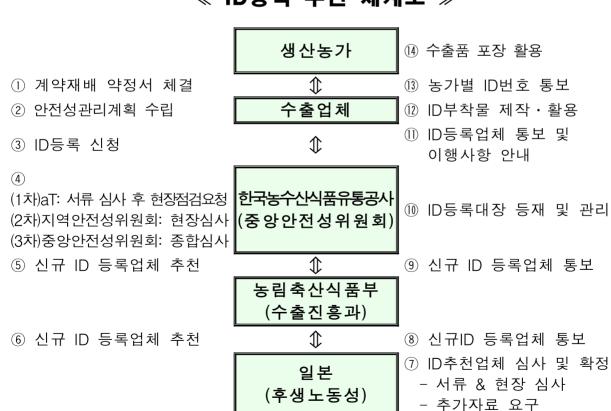
ID등록 추천

- □ 유통공사는 중앙안전성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농림축산식 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에 ID등록 추천 요청
- 농식품부는 추천된 업체를 일본 후생노동성에 ID 등록 추천
 - O 일본의 추가자료와 현장실사 요청시 수시대응
 - ※ 추가 조사에 따른 소요 경비가 발생할 경우. 신청 수출업체가 부담

ID등록 통보

- □ 농식품부는 일본 측에서 ID등록 회신 시 유통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관계기관 및 수출업체에 해당 내역 통보
 - 유통공사에서는 자체 『ID등록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

≪ ID등록 추진 체계도 ≫



ID농가 추가 등록

- □ ID등록 수출업체는 유통공사 지역본부에 신규 농가를 추가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유통공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
 - ※ 제출 서류:『신규 ID등록 제출서류』 중에서 ①,②,③,⑦,⑨,⑪,⑫
 - ※ 해당 지역본부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반드시 안전성위반 여부 등을 확인
 - ※ 해당 지역본부는 농가 ID 최초 등록 및 추가시 해당농가가 상위단위(영농조합법인, 단위 농협)로 타 수출업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월별 채소류 ID 등록현황과 대조하여 확인
- □ 유통공사에서는 수출업체의 추가 등록 요청이 있을 시, 〈별지 15호 서식(2)〉 양식에 따라 농가를 평가하고, 농가 부적합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의 심의를 거쳐 추가 등록
 - O 추가 신청 규모가 농가수 10농가 이상 또는 기존 계약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지역안전성위원회
 - 추가 신청 규모가 수출업체 농가수 또는 기존 계약 면적의 50% 미만 경우: 해당 유통공사 현장심사 후 결정(지역안전성위원회 심의 생략)
 - ※ 농가 추가등록 시 수출업체와 공통시설에 대한 평가 생략 가능. 단 공동선별장 등 추가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평가 실시

ID 변경

- □ 수출업체 소속 ID농가 등록내용 변경(명의, 면적, 공급계약기간 등)요청 있을 시
 - O (유통공사 지역본부) 해당농가에 대한 수출업체의 관리 현황(농약안전 사용지침 준수 서약서 제출여부, 안전성 교육 이수여부 등) 및 사실확 인을 위한 제반 서류를 확인 후 본사에 변경 요청
- □ 기존 ID농가의 수출업체간 이동 시 현장심사 생략 가능하나, ID 취득 후 2년이 경과된 농가는 현장심사 실시 필수
 - (이동 후 수출업체) 이동 전 수출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첨부하여 농가 ID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20일 이내에 농가 ID 등록을 신청해야 상기 심사 절차 생략이 가능

ID 삭제

- □ 유통공사 지역본부 점검결과, ID보유 수출업체가 해당 품목의 수출실적이 2년 이상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 ID 삭제 처리 보고
 - O 삭제 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에 해당업체에 삭제예고 사전 통보
 - O 농식품부는 수출업체의 ID 삭제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본 후생 노동성에 통보

마. ID 업체(농가)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수출업체(농가)에 대한 ID등록 관리대장 등재 및 관리
 -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에 변동사항 통보(월 1회)
 - 수출업체 및 농가에 변동사항 통보(명의·면적, 안전성위반, 사용위반, 기타위반 및 수출실적 없음 등의 사유로 인한 ID삭제 등)
- □ 유통공사 지역본부는 폐업, 사업 중단, ID농가 추가·탈퇴·내용변경 등 ID업체 및 농가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본사에 보고
- □ ID 업체·농가의 안전성 위반여부 관리 및 지도·감독
- □ ID 등록 수출업체 및 농가 교육 실적 점검

수출업체

- □ (자체 안전성관리계획) 수출업체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자체 안전성관리계획을 유통공사 지역본부로 제출
 - * 신규 ID 등록업체는 등록 기준일 1개월 이내 제출
 - O 수출업체는 〈별지 2-1호〉에 따라 분기별 자체 안전성관리 결과를 유통 공사 지역본부로 제출

- □ (농약관리) 농식품부의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및 농촌 진흥청의『일본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준수
 - O 자체 안전성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 실시
 - O 농약 공동구매, 농약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 농약사용 관리 철저
 - O 농관원의 수출농산물 안전검사 기준 준수
 - □ (농가 관리) 수출업체는 계약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 지도 실시
 - O 계약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참여 독려
 - 수출농가 작황 부진, 농약피해 등으로 인한 수출 불가시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과 유통공사로 해당 사실 통보
 - O 타 수출업체와 약정 체결한 생산 농가와는 이중계약 불가
 - 소속농가의 등록내용 변경(명의, 면적, 작형 등) 발생시, 유통공사 지역본부에 보고하고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
 - 수출업체가 소속농가와의 공급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해지 발생시, 해당 유통공사 지역본부에 보고
 - □ (공동 선별장) 선별·포장이 가능한 공동선별장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성이 보장된 수출품 출하
 - O 선별장의 위생·안전성 유지를 위한 작업과정 매뉴얼 작성·비치
 - 관리책임자는 농가별 출하량 및 선별포장 내역 기록관리
 - □ (ID부착물) ID부착물은 일본수출 포장박스 외부에 부착(또는 인쇄)
 - O 관리 담당자는 ID 부착물 사용기록부<별지 13호 서식> 기록·유지
 - 관리 담당자는 매월 사용내역을 유통공사 관할 지역본부로 보고, 유통 공사 관할 지역본부는 분기별 수출업체의 부착물 사용 내역을 현장 확인 후, 본사에 결과 보고

생산농가

- □ 일본 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일본 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 수출업체의 『안전성관리계획』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이와 관련된 수출업체와의 연명 서약서 사본을 유통공사에 제출
 - ※ 파프리카는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의 『농약 안전성관리 프로그램』 포함
- □ ID 등록농가의 수출품 재배포장에는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표시
 - O 일본수출 채소류 생산농가가 관리하는 재배지(비닐하우스 등)임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표찰 부착
 - 표찰은 재배지(비닐하우스 등)의 출입구에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고 연동 비닐하우스의 경우 구분 조치

< 표찰 예시 >

○ 표찰 : B4 사이즈(가로 364mm × 세로 257mm)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 재배지]

- 생산농가명(ID 등록번호) : 홍길동 (000)
- 계약 수출업체명(ID 등록번호): (주)00상사 (00)
- 주소: 00도 00시 또는 00군 00면 000-00길
- 생산농가 연락처 (핸드폰): 지역-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예2) 연동 비닐하우스 구분 : A4 사이즈(가로 297mm × 세로 210mm)

A

B

C

D

- □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 시 수출업체의 농약전담관리자와 협의
 - 농약은 잠금장치를 구비한 별도의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농약이 아닌 활성제, 친환경약제 등과 동일 장소에 함께 보관 금지
 - 『농약관리 기록대장』〈별지 9호 서식〉, 『비료·활성제 관리 기록 대장』〈별지 10호 서식〉, 『농약 공동구입·배포 기록대장』〈별지 14호 서식〉등 사용내역 작성
 - 농약을 임의로 구매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시 필요한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 수출품의 작황 부진, 농약피해 등으로 인한 수출 불가시 수출업체에 해당 사실 통보
- □ 농가는 등록내용(명의, 변적, 작형 등)의 변경 발생시, 해당 수출업체에 보고

안전성교육

- □ ID 등록업체 및 소속 농가는 안전성 관련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수출 안전성교육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함
 - O 수출업체 안전관리전담자 : 연 2회 / 총 8시간 이상
 - O 수출농가 : 연내 4시간 이상
 - * 농식품부 주관, 농진청이 진행하는 「찾아가는 수출 종합컨설팅」도 안전성 교육시간 으로 인정
 - 안전성 관련 교육 내용 : 국내·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약 구매· 사용·보관 관리, 재배 포장 위생관리 등
 - O 안전교육기관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농관원, 농진청, 농업연수원,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유통공사 등)
 - 수출업체는 자사 및 소속농가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유통공사 지역본부로 보고
 - * 유통공사는 매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교육일정을 파악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ID 등록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ID 등록업체 교육 요청시 농진청·농관원 등 전문 기관과 외부전문가 협조를 받아 교육 실시(필요시 분기별 순회교육)

7. 혼입 방지대책

- □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 대표는 ID 등록 생산농가 이외의 생산품을 혼입하지 않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포장·선별작업 관리
 - O 관리책임자는 수출을 위한 공동선별장 입고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일본수출 (채소류명) 공동선별장 작업일지』및 『일본수출 (채소 류명) ID 부착물 사용기록부』를 통해 혼입 방지대책 강구
 - 입고단계에서 ID 등록 생산농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박스 또는 포장상자에 생산농가명 표기
 - 출하단계에서는 입고된 생산품이 수출업체 및 해당 생산농가의 수출품 임을 확인하고, 해당 ID 부착물을 정확하게 수출 포장박스에 부착(또는 인쇄)

- □ 유통공사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수출업체 및 ID 등록 생산농가, 관리책임자의 혼입 방지대책 이행 점검, 농업기술센터는 현장지도 실시
 - O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과 제재대상 규명 및 제재조치 시행

8. 안전성 조사

가. 기관별 조사체계

기 관	구 분	대 상	시 기	횟 수
농관원	수출 전 전수조사	ID등록 농가	최초 수확 10일 전후	작기별 각 1회
하 신전 	수확기간 중 전수조사	100 = 5/1	작기중 취약시기	수시 검사
수출업체	*자체검사	계약농가	수출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수시 점검반	수출업체	수시 점검	분기별 1회

- * 모든 안전성조사·분석기관은 농관원의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성조사 실시요령<별첨 I >에 따라 안전성조사 및 분석업무 수행
- ** 안전성 검사기관: 농관원 또는 농관원 지정 민간 안전성검사·검정기관, 시·도 분석기관

나. 안전성 수시점검반 운영

- □ 목적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수출업체및 농가의 농약 안전관리 및 경각심 제고
- □ 담당기관 : 유통공사 지역본부
 - O 관내 일본수출 채소류 재배농가 현황판 비치
 - O 관계기관 조사 시기, 검사실적, 취약시기 등을 감안 점검계획 수립
- □ 수시 안전점검반 구성
 - O (반장) 유통공사 지역본부장
 - O (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 시·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센터, 파프리카 자조회(파프리카 품목만 해당) 등
- □ 점검 대상
 - O 주요 병해충발생 다발(인근) 지역 등 수시점검이 필요한 농가
 - O 신규 농가, 안전성 부적합 발생농가, 안전관리 시설 부실 농가 등
 - O 관할 수출업체 소속농가의 공급계약기간 확인 및 계약 종료시 농가 ID삭제

9. 위반 제재

가. 제재 절차

- O 업체 또는 농가가 수출전 안전성 검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민간검사기관 및 농관원에 잔류농약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경우, 분석결과는 제재사항 적용 제외
 - ※ 농관원 검사 부적합일 경우, 업체는 해당농가의 검사물량을 농관원 지도에 따라 (공문) 수출에서 제외시키고 해당물량의 처리결과를 유통공사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농가·업체 ID 삭제 등 제재 조치
- 유통공사에서는 안전성 위반, 혼입 등 수출업체·농가 위반 사항 발생 시수출업체에 즉시 해당 품목의 수출중단을 지시하고, 수출농산물 안전성 위반내역 〈별지 17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업체에 요청
 - ※ 국내 생산단계 안전성 위반 시 농관원에서 수출중단 통보
- 유통공사는 (나)항의 안전성 위반 제재 기준에 따라 7일내 수출업체와 농가에 제재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 해야 함. 제재기준일은 농관원, 수입국 등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경우는 문서시행일부터 적용하며, 문서가 없는 경우는 관련기관 또는 위반업체로부터 위반사항을 확 인한 날부터 적용
 - ※ 해당 수출업체와 농가는 위 조치에 불복 시 제재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이의제기 가능

【 구 비 서 류 】

- ① 안전성위반 경위서 <별지 17호 서식>
- ② 위반농가 농약구매·배포 기록대장. 농약사용기록대장
- ③ 위반농가 안전관리 및 안전성교육 참여 실적
- ④ 전담관리사 안전관리 내역(순회지도기록부 등)
- 안전성 위반 업체는 해당품목 소속농가의 안전성 검사 등 자체 안전관리를 1개월 이내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2-1호 서식〉에 따라 유통공사로 보고 ※ 안전성검사의 경우 소속농가의 30% 이상 검사 실시
- 유통공사는 수출업체나 농가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중앙안전성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건에 대하여 심의 후 결과 통보
- O 안전성 위반에 따른 수출물류비 제재는 중앙안전성위원회에서 수출 물류비 지원지침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

나. 제재 기준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시 제재

구 분		국내생산 단계	일본 수출 검역단계
1회	수출업체	1년간 수출농가 ID추가 등록 제한	ID삭제 후 1년간 등록제한
I귁	농가	ID삭제, 1년간 ID등록 제한	ID삭제 후 1년간 등록제한
2회	수출업체	2년간 수출농가 ID추가 등록 제한	ID삭제 후 2년간 등록제한
스왹	농가	ID삭제 후 2년간 ID등록 제한	ID삭제 후 2년간 ID등록 제한
그리	수출업체	3년간 수출농가 ID 추가등록 제한	ID 영구 삭제
3회	농가	ID삭제 후 3년 등록 제한	ID 영구 삭제

- * 위반 횟수는 위반 발생일 기준으로 2년간의 누계치
- * 제재기간 중 추가 위반 시에는 추가발생일 기준으로 제재시점 재적용
- * 물류비 및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제재는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에 따름
- * 국내생산단계 안전성 위반 사항 중 '일본 수출채소류 농약안전사용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불가(안전성 위반). 단, 지침이 모든 농약성분을 담고 있지 못하거나 한일간 농약허용치 기준 업데이트 시차를 감안하여, 국내·일본 허용 기준치 이하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제재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2회 부터는 정상제재 적용(2회 위반으로 처리)
 - 수출업체 1년간 수출농가 ID추가 등록제한 → 3개월 수출농가 ID 추가등록 제한

ID 사용 위반

□ ID 사용 위반 제재

O 수출업체의 ID관리 소홀시 아래 제재기준을 적용

	제재 기준			
구 분	1회	2회	3회	
- 등록된 ID를 일본수출 외 목적으로 사용				
- 타수출업체 ID도용	ID삭	제 후 2년간 등	등록 제한	
- ID농가가 다른 농가의 생산품 혼입				
- ID부착물 사용기록부 월별 보고 미실시	1차 경고	2차 경고	ID 삭 제 후 1년간 등록 제한	
- ID부착물 분실 발생시	1차 경고	ID 삭제 후 1년간 등록 제한	ID 삭제 후 2년간 등록 제한	

기타 위반

- □ 다음 내용을 비롯한 모든 안전성 또는 안전관리 위반 사항들은 "중앙 안전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또는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 O 수출 채소류 안전성관리기관의 지도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 O 자체 안전관리계획 또는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는 경우
 - O 기타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관련 필요한 경우

10. 수출 채소류 「안전성위원회」 운영

가. 중앙안전성위원회

□ 관련 근거: 농산물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 제17조

□ 구성 및 운영

- 수출 채소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제17조의 범위 내에서 "중앙안전성위원회"를 둔다.
- O (위원장) 농식품부 수출과장, (간사) 유통공사 부장
- 위원은 농식품부 수출담당과 및 품목담당과, 농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농촌진흥청(수출농업지원과, 농자재관리과, 국립농업과학원), 유통공사 등 "수출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8명 내외로 정한다.
- O "중앙안전성위원회"는 유통공사에서 관리·운영한다.

🔲 기능

- O ID 등록업체 추천을 위한 적격여부 심사
- 안전성 위반사례 발생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 농촌진흥청에서 제출한 품목별 수출 농약안전사용지침(안)을 심의하여 품목별 수출 농약안전사용지침 확정
 - 일본 등 주요 수출국 농약의 분석법 및 품관원 분석가능 여부 확인
 - 수출업체, 생산농가 교육실시 여부 확인

- 지역안전성위원회 심의결과 중 중앙안전성위원회에서 재심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심의
- O 일본 등 주요 수출국 수출 채소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등

나. 지역안전성위원회

□ 구성 및 운영

- 수출 채소류에 대한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앙안전성위원회" 범위 내에서 "지역안전성위원회"를 둔다.
- O (위원장) 유통공사 지역본부장, (간사) 지역본부 수출담당
- 위원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원(사무소), 사도 수출담당, 사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해당품목 자조회 등 7명 내외로 구성
- O "지역안전성위원회"는 유통공사 해당 지역본부에서 관리·운영한다.

□ 기 능

- O ID 신규 등록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 심사
 - ID 농가 추가등록 시 자체 안전성 현장 심사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에 부적합 사례 발생시 원인규명 및 자체 개선방안 마련
- O 수출 채소류 생산 및 수출 안전관리 개선(안) 발굴 및 건의
- O 부적합품 발생 등 안전성 위반이 우려되는 생산농가, 작목반 등에 대한 안전성 위반 예방활동 및 컨설팅
- O 위원회 개최결과는 7일 이내 유통공사 본사에 보고

다. 중앙(지역) 안전성위원회 소집

- O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O ID등록 수출업체·농가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 O 재적위원의 2/3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 O 기타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O 안전성 위반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역안전성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강구, 안전성 위반 예방활동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성 위반 발생 시 2주내 재발방지 마련
 - 지역안전성위원회의 정기 개최(분기별 1회)를 통한 안전성분야에 대한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강구
 - * 지역안전성위원회 정기개최 시 논의 사항
 - 1. ID 업체, 수출농가(수출전문단지 포함)의 안전성 위반 여부 확인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 2. ID 업체. 수출농가(수출전문단지)에 대한 안전성교육 계획 수립 및 이수 확인
 - 3. 안전성 위반 예방활동 및 컨설팅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 확인

11. 기타

동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안전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안전성조사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기관별로 별도로	정하여
수출 채소류 중앙안전성위원회 제출 후 시행	
동 지침의 ID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에 등록	완료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안전성조사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기관별로 별도로 수출 채소류 중앙안전성위원회 제출 후 시행

품목의 ID등록 수출업체에 한정하여 물류비를 지급

일본수출 채소류 (품목명)ID (신규등록/농가추가) 신청서

	영 자	
수출업체명	한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한 글	
ᅵ ᄖᅭᄭ	영 문	
주 소	한 글	도로명 주소로 작성
T T	영 문	
	전 화	FAX
연락처	휴대폰	대표 담당자
	E-mail	

당사는 정부의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첨부의 서류를 구비하여, 일본 수출 채소류 ID (품목명 :)(신규등록/농가추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 표 자

(인)

일본수출 채소류 중앙안전성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① 일본 수출 채소류 ID 등록 신청서<동 서식>

- ② 자체 안전성관리계획서 <별지 2호 서식>
- ③ 계약재배 약정농가(생산자단체) 명단 <별지 3호 서식>
- ④ 계약재배 농가(생산자단체)별 현황 <별지 4호 서식>
- ⑤ 일본 수출 채소류 계약재배 약정서 〈별지 5호 서식〉
- ⑥ 공동선별,포장 작업장 현황(사진첨부) 〈별지 6호 서식〉
- ① 일본 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 준수 서약서 〈별지 7호 서식〉
- ⑧ 수출업체 개요 및 채소류 일본수출실적 <별지 8호 서식>
- ⑨ 수출업체 자체 잔류농약검사 내역 및 결과
- ⑩ 무역업 신고필증 사본
- ⑪ 일본 수출 채소류 ID현장평가표<별지 15호 서식(1,2)>에 의한 자체 평가결과
- ⑫ 계약농가의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 자조회 가입확인서(자조회 발행)
- 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18호 서식>
- ⑭ 무역정보이용 동의서<별지 19호 서식>
- 주1 ⑫: 파프리카 ID 신청업체만 작성

자체 안전성 관리계획서(품목명:)

수 출 업체명		대표이사	(서명)					
I. 농약 관리 및 검사								
관리 담당자	- '	소 속						
□ 농약 공동구매./	□ 농약 공동구매.사용관리							
공동 구매처		구매 주기						
보관 방법								
o 관리 계획 (예시) - 농약관리 및 검사에 대한 전담 관리담당자 지정 -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맞는 농약 구매 확인·사용·보관 - 농약에 대한 공동구매처, 구매주기, 보관방법을 작성								
□ 농약사용 기록대	배장 비치 및 기록							
관리 주기		보유 기간	1년					
o 관리 계획 (예시) -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농약사용 여부 기록(사용한 농약명 및 사용량 기재) - 농약 사용 주기, 살포 횟수, 살포 간격 등 기록								
□ 자체 잔류농약검사 계획								
검사 주기	월 1회 이상	검사 시기	작기중					
o 관리 계획 (예시) - 수출 선적 10일전 검사 신청(농관원, 안전성검사기관) - 안전성 검사여부에 대해 수출업체의 검사 실적 확인								

Ⅱ. 계약농가 지도·관리						
관리 담당자		소 속				
□ 계약농가 지도 전	□ 계약농가 지도 계획					
방문 주기		방문 횟	수			
지도 내용						
o 관리 계획						
(9/1/)						
- 매월 2회 계약농가	방문을 통한 안전성 교	교육 확인 및 독	4			

Ⅲ. 공동 선별장 운영 및 점검						
관리 담당자	소 속					
□ 공동선별장 관리 계획						
공동선별 작업일지 관리 주기	보유 기간	1년				
o 관리 계획 (예시) - 공동선별장 지정(이용여부 확인)						
□ 포장 위생관리 계획						
o 관리 계획 (예시) - 매 수출물량 작업시 위생 확인 - 포장재 보관 창고 위생 확인						

Ⅳ. ID 부착물 사용 관리						
관리 담당자	소 속					
ID 사용 기록대장 관리 주기	보유 기간	1년				
o 관리 계획 (예시) - 부착물 기록 관리 여부 확인(제작 및 사용량 확인)						

자체 안전관리계획 결과보고(품목명:)

수 출 업체명				대표 이사		(서명)
T LOF 71-71 FU 74	11.					
I. 농약 관리 및 검				71 71 7	H 71	
점검 항목	<u>†</u>			점검 김	⊒ 47	
농약 공동구 매 및 시	용관리	(구매정 (구매농				
농약사용 기록대장 비치 및 기록		(비치정 (비치기				
자체 잔류농약검사		(검사기 (검사일 (검사결	실자)			
I. 계약농가 지도·	관리					
계약농가 지도 실적						
Ⅲ. 공동 선별장 운영	및 점검					
공동선별장 관리						
포장 위생관리						
Ⅳ. ID부착물 사용 곤	ị리 -					
ID부착물 사용						

계약재배 약정농가(생산자단체) 명단

일련 번 번	성명	재배현황 (유리온실/비닐온실 등)	주소(재배지)	재배면적 (㎡)	소속단지명 (원예단지, 조합법인 등)	연락처 (휴대폰)	계약(약정) 만료일
1							
2							
3							
4							
5							
6							
7							
8							
9							
10							

주) 생산자단체 계약시 소속농가

계약재배 농가(생산자단체)별 현황

	한	· 글						
농가명 (단체/법인명)	한	- 자						
	영	문						
7 A	한	· 글						
주 소	영	문	도로망	경주소로 입력	령			
	전	화				FAX		
연락처 휴		-대폰			•			
	E-mail							
				재 배 현	황			
개베면정(๙)		유리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비닐-	온실	계
재배면적(㎡)								
작기구분		동기	작	하기작	-	7 1	탁	최초 출하일자
`3/1千正 								

20 . . .

농가(단체/법인)명 : (직인)

[※] 작기구분은 해당 작기란에 '○'표시

수출계약재배 약정서(예시)

(주)수출업체000 (대표자 : 0000 이하 "갑"이라 한다)과 생산자 법인(0000대표자 :

000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품목) 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 아 래 -

제 1 조 (품목 및 품위)

"을"은 000000000000 소속 농가에서 생산된 000품목의 특품을 기준으로 수출품목으로 지정한다.

제 2 조 (업무 주체)

- 1."을"은 계약 재배농가를 대표하고 수출용 000 생산 및 수확, 품질 유지, 선별, 포장 등 계약 조건에 대한 의무를 진다.
- 2. "갑"은 이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수출 업무를 총괄한다.

"갑"은 일본 수입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을"에게 납품 수량 및 납품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 주문을 하며,"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수출 물품을 인도한다.

제 3 조 (계약 기간)

0000년 00월 0일부터 0000년 0월00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 "을" 합의에 따라 연장 또는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4조 (독점 공급권)

000 은 일본 수출에 있어 "을" 은 "갑" 이외의 타 업체에 공급 할 수 없다.

제 5 조 (단가결정)

납품가격 결정은 납품 ○일전에 ○○법인에서 출하한 ○○도매시장, 가락동 도매시장(5개청과)에 출하된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종자공급)

종자선택은 "을"의 원만한 수출을 위해 국내 우수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한다.

제 7 조 (공급물량)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 8 조 (인도조건)

"을"은 공급 물량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착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9 조(거래내역의 교부)

- ① "을"은 거래 결과를 출하통지서에 기입하여 "갑"에게 교부 한다.
- ② "갑"은 교부 받은 출하통지서에 의거한 거래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내용 발견 시에는 즉시 "을"에게 알려야 한다.

제 10 조 (대금결제)

계약물량 인수 후 0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지정하는 결제 계좌로 송금 하여야 한다. 인수 후 30일을 초과시 "갑"은 "을"이 정한 내부 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 11조 (안전성 준수 및 검사)

"갑 "과 "을 은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을"은 "일본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 지침"에 등록된 작물보호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생산 농가를 방문하여 작물보호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수출품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잔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2조 (안전성 위반 및 훈증·폐기·반송에 따른 책임 범위)

한국, 일본에서 안전성 검사 시 잔류 허용치 초과 검출 및 식물검역 시 벌레 발생에 의해 훈증, 현지폐기 비용 및 상품 대금 또는 반송경비 등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선적에서 통관 절차까지의 <u>최소기간(만3일)</u>을 경과 후 통관 지연과 기타 사유로 인한 상품 손실 및 위 내용을 위반하여 수입업체가 손해보상을 청구한 경우 "갑"이 바이어와 혐의하고 현지 처리 소요 비용과 손해보상금은 "갑"이 부담한다.

제13조 (수출중단)

제11조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및 제12조와 관련하여 수입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선적을 즉시 중단한다.

제 14조 (클레임)

상품의 품질(신선도, 규격불량, 중량 등)에 따른 클레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5조 (관세 등 환급권한)

이 계약과 관련 하여 "갑"의 명의로 수출 후 관세(수출포장재, 부자재 등) 등의 환급권이 있을 때 당해 환급권한은 "을"의 소유로 하며, "갑"은 "을"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제 16조 (수출촉진자금 및 물류비)

각 지자체의 수출 촉진 자금이 있을 시 생산자 분은 "을"이 수출자 분은 "갑"이 수혜하며 유통공사에서 지원되는 수출물류비는 "갑"이 수혜 한다.

제 17 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갑", "을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갑", "을 "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갑"의 관할 재판소에 재소하여 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중재기관의 중재로 처리한다.

제 18조 (기타)

① "갑", "을"은 본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으나, 본 계약서상의 범위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② 기타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갑", "을"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 ③ 갑"과 "을"은 협력자 및 동반자의 입장으로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매년 지속적인 000품목 등의 채소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 본 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일

◆ "감"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자: (인)

◆ "을"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자: (인)

- ※ 계약재배 농가가 생산자단체(영농법인, 작목반 등)일 경우 소속농가별 서명날인 명단 첨부(별첨양식)
- ※ 본 예시는 계약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계약당사자간의 상호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공동선별 포장 작업장 현황

작업장명 (단체·법인명)	한 글
	한 자
	영 문
 주 소	한 글
, -	영 문 <i>도로명주소</i>
책임자	전 화 FAX
연락처	휴대폰
	E-mail
	작 업 장 현 황
시설 및 장비 설치년도, 처리능력 등	
면적(㎡)	
작업장 매뉴얼	
관리자	
점검기록부	
사진 등 기타	

일본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 준수 서약서

(수출업체명:	•
(I 色 日 M で・	

- 1. 본인은 정부의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및 농진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 2. 본인은 농산물 생산과정에 〇〇 업체와의 "수출계약재배 약정서"와 농약전담관리자 운용을 통한 농약 공동구매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선별장 사용 등 업체의『자체 안전성관리계획』을 준수한다.
- 3. 본인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교육기관에 서 연 8시간 이상 안전성 교육을 이수한다.
- 4. 본인은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및 수출업체의 『자체 안전성관리계 획』에 따른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에 성실히 협조한다.
- 5. 본인의 수출품(생산단계 및 납품후)에서 안전성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의 제재기준에 따른 조치에 따른다.

위의 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서 약 자 ≫

○ 성 명 : (서 명)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수출업체 개요 및 채소류(품목명:) 일본수출실적

1. 업체명				
□ 회사개요				
조직현황설립대소 지인원	표 : 배 지 :			
○ 연혁 -				
-				
□ 수출실적(괴	과거 5년간)			
구 분				
재배면적(평)				
수출량(톤)				
안전성위반				
□ 안전성검시	ㅏ실 적(최근 2년	<u>-</u> 1)		
구분	계	자체검사	농관원 검사	일본 통관검사
검사회수				
위반회수				

농약관리 기록대장

(품 목:)

○ 재배농가: 주소: 전화:

	구 입	(입 고)			사	용(출 고)				
일자	농 약 명	구입량 (g 뜻 ๗	구입처	일자	사용량 (g 또 ๗	희석방법 (사용물량, &) (살포면적,㎡) (처리방법)	사 용 목 적 (방제대상)/ 하우스번호	사용후 간 량 (g _{또 때})	조치결과 (잔량 ^{처리결과)}	관리책임자 확 인 (날짜/서명)
4/1	올가미 액상수화제	500ml	○○무역 (공동관리 추체기입)	4/1	500ml	1,000 <i>l</i> 1,000 ㎡ 스프레이	총채벌레/ B동	6/3 홍길동	캐비넷 보관	6/3 홍길동

※ 사용일자별 칸 구분에 관계없이 아래 기록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하우스번호를 기재

1. 제 품명: 상표명으로 적되. 반드시 제형명(수화제, 액상수화제 등)까지 기재

○ 상표명으로 적으면 문제발생 시 농약제조회사를 추정할 수 있음

2. 사용약량 : 실제 사용한 약량을 a 또는 째 단위로 표시

3. 희석방법

(사용물량) : 농약을 희석한 물의 양을 ℓ 또는 말로 표시

(살포면적) : 실제 살포한 면적 표시(m²로 표시)

(처리방법): 스프레이(물에 타서 살포했을 때), 관주(양액), 훈연, 연무 등으로 기재

4. 사용목적(방제대상) : 담배가루이 등 방제하고자 하는 병해충명을 구체적으로 표시

5. 관리책임자 확인 : 안전성 전담관리요원(수출업체 농약안전성 관리책임자) 확인일자 및 서명

비료 활성제 관리 기록대장

(품 목:)

○ 재배농가: 주소: 전화:

	구 입	십 (입 고)			٨	사 용 (출 고)				
일자	비 료. 활성제명	구입량 (g ﷺ 씨)	구입처	일자	사용량 (g _{또 때})	희석방법 (사용물량, l) (살포면적,㎡) (처리방법)	사 용 목 적 (방제대상)/ 하우스번호	사용후 잔 량 (g ﷺ ₪	조치결과 (잔량 ^{처리결과)}	관리책임자 확 인 (날짜/서명)
4/1		500ml	○○무역 (공동관리 추체기입)	4/1	500ml	1,000 <i>l</i> 1,000 ㎡ 스프레이	총채벌레/ B동	6/3 홍길동	캐비넷 보관	6/3 홍길동

- ※ 사용일자별 칸 구분에 관계없이 아래 기록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하우스번호를 기재
- 1. 제 품 명 : 상표명으로 적되, 반드시 제형명(수화제, 액상수화제 등)까지 기재
 - 상표명으로 적으면 문제발생 시 비료·활성제 제조회사를 추정할 수 있음
- 2. 사용약량 : 실제 사용한 약량을 g 또는 ™ 단위로 표시
- 3. 희석방법

(사용물량): 비료・활성제를 희석한 물의 양을 ℓ 또는 말로 표시

(**살포면적**) : 실제 살포한 면적 표시(m²로 표시)

(처리방법): 스프레이(물에 타서 살포했을 때), 관주(양액), 훈연, 연무 등으로 기재

4. 사용목적 :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표시

5. 관리책임자 확인 : 안전성 전담관리요원(수출농산물 안전지킴이) 확인일자 및 서명

일본수출 채소 생산농가 지도 점검 기록부

□ 재배	농가 : 품목 : 일자 : 년	□ 계약 수출업체 : 면 월 일 □ 담 당 지 도 사 :	(인)
<u></u> 구 분		지 도 내 용	
지도 · 점검	농약안전 사용지도	※ 수출품목별 적정 농약 안전사용여부 확인·지도내용	
사항	기타 지도 · 점 검 내 용	※ 재배기술지도내용, 각종대장 기록사항지도 또는 점검내	요
특기 사항	※ 농약잔류검	사결과 부적합품 조치내용 등	

□ 공동선별장 명칭 :

일본수출 [채소류 명칭] 공동선별장 작업일지

	□ 관리책임자 :										
7101			작업량			농가별	! 작업량		관리책임자확인		
작업 일자	수 출 업체명	단량 (kg)	수량 (CTN)	중량 (kg)	농가명 (ID)	단량 (Kg)	수량 (CTN)	중량 (Kg)	농약사용대장 첨부	작업량 확인	
					홍길동 (000)						

- ※ 1. 작업량은 수출량을 기준으로 기록관리
 - 2. 관리책임자는 농가별 농약사용기록대장 사본을 작업일지에 첨부하여 보관

일본수출 [*채소류 명칭*] ID부착물 사용기록부

□ 수출업체 :	(직인)
□ 관리책임자 :	(인)

기 간	농가명(ID)	전회잔량	제작수량	사용수량	금회잔량	확	인
-							

※ 확인란에는 관리책임자가 서명(또는 날인)

농약 공동 구입 및 배포 기록대장

□ 지도점검 관리자 :		
□ 품 목:	□ 해당농가수 :	농가
□ 생산(단지)지 :		
농약명 .		

구 입 현 황 배 포 현 황							
		ə		<u>- П</u>	포 연 췽	재고량	안전성
구 입 일 자	구입처	구입량	배 포 일 자	배포량	배포농가	1	관리자

<별지 15호 서식(1)>

일본수출 채소류(품목명) ID 현장 평가표(수출업체)

□ 업체명 :

	평	ul ¬					
	평 가 내 용	적	부	비고			
1. 일	1. 일반 관리 사항						
1-1	관리사무실에 지도 등을 이용하여 공동선별장, 재배지, 보관 창고 등을 표시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지 유무						
1-2	농가 재배면적, 지번, 품목, 시설형태,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 관리 적정성						
1-3	농가 생산자이력추적 등록 및 관리 유무 - 해당 지역 농관원 확인하여 농가 일치여부 확인						
1-4	농가에 대한 자체점검(농가 현장평가표 활용) 실적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실적 관리 유무						
1-5	작물보호제 전담관리사 이력 및 재직증명서 확인						
2. 안	전 관리 사항						
2-1	수출국의 잔류허용 기준 최근 목록 구비 여부						
2-2	작물보호제 등 공동구매계약서 및 농가의 동의서 유무						
2-3	작물보호제, 비료.활성제 공동구입 및 배포 내역서(3개월 이상) 보유 여부						
2-4	계약농가 작물보호제 안전사용 지도체계의 적정성						
2-5	생산농가 지도.점검 기록부 관리 유무						

평가결과: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일본수출 채소류(품목명) ID 현장 평가표(농가)

□ 수출업체:	□ 농가명:

	평 가 내 용					
	ਰ /1 ਮ ੀ ਰ	적	부	비고		
1. 일	반 관리 사항					
1-1	수출국의 잔류허용 기준 최근 목록 구비 여부					
1-2	농약관리 기록대장 기록 여부(입출고, 사용일, 사용량 등)					
1-3	비료사용과 관련하여 기술센터 등의 시비처방전 유무					
1-4	작물 재배지의 토양 검사 실시여부 (정부인증 분석기관 유무/유효기간 4년) ※ 양액재배일 경우, 관할 농업기술원 혹은 농관원 수질 검사성적서만으로 대체 가능					
1-5	작물 재배지의 수질 검사 실시여부 (정부인증 분석기관 유무/ 유효기간 4년) ※ 양액재배일 경우, 관할 농업기술원 혹은 농관원 수질 검사성적서만으로 대체 가능					
1-6	공동구매계약서(작물보호제) 및 농가의 동의서 확인					
1-7	재배 작물 수출실적 또는 수출품 재배경험 등 안전관리 및 수출마인드 확인					
1-8	재배필지에 대한 영농일지 기록 여부(3개월 이상)					
1-9	농가 재배지 자경 또는 임차 확인 유무 - 임차지의 경우 임차전 재배작물 확인			확인		
2. 재	배지 관리 사항					
2-1	생산자 이력추적등록 유무(농품관원 비교 확인)					
2-2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를 근거하여 경작면적과 지번 및 신청 품목의 일치여부 확인					

2-3	온실 및 주변의 청결.위생 관리 및 농기구 보관 등의 정리 상태, 쓰레기, 농가 작업 부산물, 폐기물 처리장소 유무 및 농장 내 개, 쥐, 파충류, 조류의 침입 대책 적절성		
2-4	재배지 주변 환경(축사, 주유소) 및 타 재배지로 부터 비산에 의한 오염요인 및 대책 적절성		확인
2-5	최근 2년간 수질.토양 및 재배 품목에 대한 출하 10일전 잔류분석결과 증빙 보유 여부(품관원 등 정부기관 및 정부인증 민간기관 실적 유효)		
3. 농역	약.비료 관리 사항		
3-1	농가 보유시설 확인(단, 공동관리 또는 무농약인증 농가는 관련 서류 또 는 시설 확인으로 보유 인정)		
3-2	농가의 관리방법(개인 또는 공동) 및 정리상태 적정성		
3-3	공동구매.배포하는 단체는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여부 확인(공동구매.배포 대장과 농가의 살포대장 기록 일치여부 확인)		
3-4	농장 외부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환기시설, 잠금장치유무, 열쇠보관 관리 적절성(이동이 가능한 시설(캐비넷 등)은 잠금가능여부, 보관 장소 적절성, 경고표시 부착		
3-5	보호제 혼합 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용기와 도구(저울, 비이커 등)의 비 치 및 청결상태 유지 여부		
3-6	작물보호제와 비료.활성제의 분리보관 적절성(재배 품목별 구분, 분말은 유제품 위에 보관, 청결상태 유지 필요)		
3-7	전담관리사 생산농가 지도.점검 실태, 보호제의 사용잔량 관리 실태 또 는 처리기록 관리 상태		
3-8	작물보호제 살포보호복(고무장화.장갑, 방수복, 얼굴마스크) 구비 여부 및 세척하여 타 비품과 구분관리 등		확인

* "확인" 사항은 적부 여부에 포함되지 않음

평가결과:	정한	%	부적합	%
당시 글씨 .	Ήü	/0	구걸입	/(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일본수출 채소류(품목명) ID 현장 평가표(공동선별장)

□ 수출업체:	선별장 :
---------	-------

	평	비고				
	평 가 내 용 					
1. 시	설 관리 사항					
1-1	작업자가 위생수칙을 이행하기위한 안내문(손 씻기, 찰과상 조치, 흡연.식사. 휴식장소, 의복착용 방법 명시) 부착 유무					
1-2	농산물 수확과 관련하여 문서화 또는 도형화된 품목별 자체 품질 및 선별 기준 적절성					
1-3	농산물 선별기준, 선별참가자 명단 및 책임자지정, 교육에 대한 증빙자료 등 기록 관리 적절성					
1-4	선별장내는 청결유지 및 위생 관리가 되어야하고, 포장제품과 자재는 오염 방지를 위한 구분 보관 유무					
1-5	일자별 및 출하농가별, 선별.포장작업 기록 관리 및 관리 책임자의 서명 등 기록 유무					
1-6	바닥은 파인 곳, 심하게 갈라진 틈, 구멍이 있는지 여부					
1-7	작업장 내 개방하는 창문은 해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위한 방충망 설치 여부					
1-8	작업장의 출입문 바닥 및 기타 공간으로 쥐 등의 침입 가능 유무 및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적절성					
1-9	문이 노화되어 녹이 슬은 곳이나, 목재나 파손이 가능한 재질 여부					
1-10	농산물을 취급하는 시설 및 장비(선별 라인, 기계, 벽, 바닥, 보관지역, 팔레 트 등)는 오염방지를 위해 깨끗하게 유지 관리 되고 있는지 여부					
1-11	온도.습도 관리 적절성, 장기보관 품목의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온도와 습 도에 대한 관리기록(1년 이상보유)			확인		

^{※ &}quot;확인" 사항은 적부 여부에 포함되지 않음

평가결과: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u>일본수출 채소류(품목명) ID 종합평가표</u>

□ 수출업체:

구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평가 점수							
	수출 능력	○수출 품목, 실적 및 계획 / 경력 ○수출계약 실적 및 바이어 관리 현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자체 안전성 계획	○생산.출하 단계별 안전관리 적정성 ○공동시설, 재배지 관리 계획의 적정성 ○농가 농약안전사용 관리 및 지도 체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일반 관리	농가관리	○ 농가.재배지 수출재배 계약 여부 ○타 품목 농가계약 및 수출 실적 ○ 농가 수출농산물 안전교육 계획 ○ 농가의 GAP, 생산이력 등록 비율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관리인원	○ 농약전담관리사 운영 여부 ○ 수출량 대비 적정 관리인원 여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농약전담 관리사	○ 농약 적정사용, 안전관리 등 전문성 ○일본 수출채소류 안전관리 전문성 ○ 농약안전사용 농가 지도관리 능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농약 안전관리	○ 농약 보관장소 확보 및 관리 적정성 ○ 농약사용 기준 확인 및 인지 정도 ○ 농약 공동구매 계약 및 분배체계 ○ 농가별 농약사용 이력정보 관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농약 안전	안전성 검사 실적	○자체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및 실적 - 월1회 이상 자체검사 실시 ※ 수출농산물 GAP 인증의 경우 가점 ※ 안전성 위반 실적 감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관리	공동선별장	○ 공동선별장 마련 유무 ○ 선별.포장작업 관리계획 적정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재배포장	○ 개배포장 관리 계획 적정성 ○ 농기구, 농약장비 등 청결.위생관리 ※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 가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지도.점검	○ 농약안전사용, 병충해 예찰 지도 계획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합계										

* 점수배분: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5점), 미흡(2점)

평가일:	년	월	Õ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별지 17호 서식>

수출농산물 안전성 위반내역

1. 위반 내역

○ 위반자 내역

수출업체			국내검사		
업체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이 름 (아이디번호)	주 소	기관	일자

○ 위반 내역

	니고이 선적량		위 반 내 역						
품 목	선적일	(kg)	위반성분	검출치 (ppm)	국내허용 기준(ppm)	수출국허용 기준(ppm)	수출국	항구	위반일자

2. 위반 경위

- 농약사용 경위, 검사/ 검출 경위에 대한 상세내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재
- ID 규정 위반(미보유 등)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술

3. 해당물량 처리 결과

	반 송					재 수출		기타 조치한 사항		
일	자	물 량(kg)	수출국	일	자	물 량(kg)	수출국	기다 포시한 사항		
								* 현지 폐기 등		

* 제출서류: 선별장 작업일지, 반송·재수출 신고내역, 제 3국 수출관련 서류 일체, 기타조치 한 내역, B/L, 수출신고필증사본, 해당물량 안전성검사실적 등

4. 재발 방지대책 및 소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일본채소류 신규 ID 등록 및 관리 및 유관기관 정보제공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수출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계약농가 정보(농가명, 재배면적, 재배지)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ID 등록 기간
-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채소류 ID 등록 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각지자체	제공항목	수출업체 및 농가정보
제공목적	지침상 유관기관 정보 제공	이용기간	-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미동의 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주민등록번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2에 근거하여 수집합니다.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귀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동의 합니다.

- 아 래 -

- 1) 제공목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
- 2) 증명서 발급기관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 3)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08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 4) 비용부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 . . .

회 사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 증명서 원본 1부.

2.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끝.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연락처 : 02-2140-0732) * 지원업체 직접 우편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별 연락처

지역	전화번호	FAX번호	비고
본 사	061-931-0823	061-804-4539	농산수출부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55	031-8010-1096	수출유통부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032-888-6164	
강원지역본부	033-920-1550	033-647-0063	
충북지역본부	043-902-9526	043-711-1581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042-389-5023	042-488-8546	수출유통부
전북지역본부	063-904-5874	063-211-7820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5	062-944-2624	수출유통부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04	053-741-5224	수출유통부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6	051-644-1440	수출유통부
경남지역본부	055-274-4814	055-274-4810	
제주지역본부	064-748-9477	064-746-94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식별코드

지 역	대 구 분	소 구 분
서울특별시	001~010	
부산광역시	011~020	부산(011)
대구광역시	021~030	대구(021)
광주광역시	031~040	광주(031)
울산광역시	041~050	울산(041)
인천광역시	051~060	대전(051)
경기도	071~090 301~320	고양(071) 화성(072) 파주(073) 안성(074) 구리(075) 양주(076) 여주(077) 평택(078) 이천(080) 용인(081) 수원(082) 광명(083) 가평(301)
충청남도	091~100 281~300	예산(091) 부여(092) 논산(093) 홍성(094) 당진(095) 서산(096) 아산(097) 보령(098) 연기(099) 공주(100) 청양(281) 강경(282) 금산(283) 태안(284) 서천(285) 천안(286)
충청북도	101~110	진천(101) 제천(102) 단양(103) 청주(104) 괴산(105) 음성(106) 보은(107) 청원(108) 충주(109) 옥천(110)
전라남도	111~120 221~240	영광(111) 장성(112) 해남(113) 강진(114) 화순(115) 무안(116) 함평(117) 광양(118) 장흥(119) 영암(120) 순천(221) 고흥(222) 보성(223) 나주(224) 곡성(225) 구례(226) 담양(227) 여수(228) 신안(229)
전라북도	121~130 241~260	김제(121) 익산(122) 고창(123) 남원(124) 정읍(125) 완주(126) 전주(127) 임실(128) 부안(129) 순창(130) 군산(241) 장수(242) 진안(243) 무주(244)
경상남도	131~150 201~220	합천(131) 함양(132) 사천(133) 창녕(134) 함안(135) 김해(136) 진주(137) 산청(138) 거제(139) 창원(140) 의령(141) 하동(142) 마산(143) 고성(144) 양산(145) 통영(146) 밀양(147) 진해(149) 남해(201) 진양(202) 거창(203)
경상북도	151~160 261~280	달성(151) 성주(152) 청도(153) 경산(154) 청송(155) 영양(156) 김천(157) 의성(158) 봉화(159) 영덕(160) 문경(261) 구미(262) 예천(263) 포항(264) 상주(265) 군위(266) 경주(267) 영천(268) 칠곡(269) 안동(270) 고령(271)
제주도	161~170	북제주(161) 남제주(162) 제주시(163) 서귀포시(164)
강원도	171~190	강릉(171) 화천(172) 태백(174) 평창(174) 철원(175) 신북(176) 횡성(177) 춘천(178) 정선(179) 고성(180) 영월(181) 홍천(182) 원주(183) 양구(184) 인제(185) 삼척(186)
세종시	191~200	

[※] 지역식별표에 명기되지 않은 재배지역은 별도 번호 생성후 공사 통보 요망